

의안번호	2208936
의 퇴 인	이종배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9.
추계번호	25F156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신설 등

【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04조의36제1항 (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)	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내국인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2	안 제104조의36제2항 (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)	- 내국인이 다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의 5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- 적용기한: 2030년 12월 31일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36제1항 (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4조의36제2항 (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가.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신설(안 제104조의36제1항)

- 개정안은 내국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5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4조의36제1항 신설)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나,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- 현행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과세자료 및 기업 재무제표 등에서 출산장려금 항목을 구분하여 집계할 수 없음
 - 출산장려금은 회계상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(경조사비) 등에 포함되어 개인 및 법인 소득 산출시 비용으로 처리되는데, 이 과정에서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되지 않음¹⁾
 - 한편, 현행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은 일정한도로 근로소득에 비과세되며 이에 대한 과세정보가 존재하나, 이를 바탕으로 출산장려금 규모를 추산하는데 한계가 존재
 -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2025년 지급되는 급여부터 적용되는 것이며, 2024년 말까지 근로소득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²⁾은 1인당 월 20만원 범위³⁾내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집계되나, 이를 초과하여 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은 집계되지 않음
 - 또한,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아 출산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음
 - 참고로, 최근 5년간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 적용인원은 2019년 48.1만명에서 2023년 47.1만명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, 금액은 2019년 3,357억원에서 2023년 3,414억원으로 소폭 증가

1) 2024년 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손비처리하도록 법령을 명확히 함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55조(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)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.
6의2.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(손비의 범위)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[이하 “손비”(損費)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

- 3의2. 임원 또는 직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
- 2)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미하나,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분리되어 있음
 - 3) 2023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출산·보육수당에 대한 1인당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,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보육수당은 20만원 한도로, 출산수당은 전액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됨

※ 2023년 이전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1인당 10만원으로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과세소득 통계에서 제외됨

[표 1]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소득: 2019~2023년

(단위: 만명,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인원	48.1	47.0	46.1	47.2	47.1
금액	3,357	3,280	3,204	3,207	3,414

주: 2023년 이전에는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 중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소득 집계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연도, 각 년도

나. 업무분담 근로자 지원금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(안 제104조의36제2항)

□ 개정안은 내국인이 다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·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5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에 따른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4조의36제2항 신설)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분담 근로자의 규모 및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나, 관련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○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고용안정장려금(코드 1345-350) 사업 중 내역사업인 ‘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’ 사업을 통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역사업의 추진 내역만으로는 개별 기업의 지원금 지급 규모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동 내역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, 2025년 예산 기준 352억원을 편성함
- 다만, 동 내역사업은 2024년부터 신규 추진된 것으로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2025년부

터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분담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됨

- 또한 해당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⁴⁾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,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정인원에 대한 지원금 총합의 한도가 20만원이므로 지원금 지급 규모만으로는 실제 전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규모를 추계하기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

4) 산업별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고 있으나, 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0명 이하인 기업, 광업·건설업·정보통신업 등의 경우에는 300명 이하인 기업을,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 200명 이하인 기업을 의미함